

환경부 보도자료

2004년 4월 15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4.4. 배포
- ☐ 사진없음
- ☐ 총 3쪽

자연보전국
자연정책과

박희정 과장
신진수서기관

전화
(메일)

02-2110-6732
kogreen@me.go.kr

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 추진

- ◇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·관리체계 개선
- ◇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자연경관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

☐ 환경부는 금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야생동·식물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·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하였다.

☐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생태계보전지역의 차등관리 및 주민불편 최소화

-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은 행위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지정·관리가 곤란(전국토의 0.2%)
-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태계의 특성·보전가치 정도 등을 토대로 3개 지역(핵심·완충·전이)으로 구분하여 지정·관리하고,

※ 핵심구역 :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

※ 완충구역 :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곳

※ 전이구역 :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허용되는 곳

※ 유네스코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을 “핵심보전 · 완충보전 · 전이보전지역”으로 구분 · 관리하도록 권고

-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설치 우선지원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시행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“원-원 정책” 실현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활성화를 도모함

②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 · 관리

-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·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
 - 자연경관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전 · 관리하기 위하여 동계획에 자연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
-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가 우수한 주변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, 자연경관보호구역(특별 보호/관리구역)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③ 자연생태공원 지정제도 도입

- 현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(국립 · 도립 · 군립공원)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면적이 광대하여 그 지정 ·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

※ '03. 6월 현재 자연공원은 국토면적 대비 4.8%에 불과함(육지면적 기준)

- 이에 따라 당해 지역의 특성, 생태 · 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토대로 자연 환경을 친자연적으로 보전 · 이용 · 접근하고 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생태관련 공원제도 도입이 필요함

-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이용·접근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보전 및 관리용지로 구분하고 관리용지는 10%이내가 되도록 함(규모 : 3만~150만 m^2)

- 관리용지 : 자연탐방, 생태학습, 야생동식물 관찰, 전망대, 전시관, 안내소 등 허용

④ 기타 생태마을 지정, 자연환경정보망 구축·운영 등

- 자연생태를 잘 보유·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생태와 잘 어울리는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상·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
-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·정보를 원활하게 생산·보급하고, 정확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□ 이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자연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한편,

- 자연경관·생물자원·자연자산 보전 등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

□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, 법제처,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(www.me.go.kr)의 "입법예고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